

2023 『세법노트북(1쇄)』 추록 및 정오표

2023 『세법노트북(1쇄)』의 추록 및 정오표를 올립니다. 세법 시행령이 당초 안과 비교하여 일부 수정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수정하고, 일부 오타를 수정하고자 합니다. 다만, 일부 의미가 바뀌지 않는 단순한 자구수정사항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.

세법 노트북-부가가치세법 1쇄

페이지	수정전	수정후
p22	(8) 수용등 경우 ②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~	②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64조 제4항(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)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
p73	(8) 매출에누리를 ~	(8) 매출에누리를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해당 금액을 판매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으로 보고 이를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개정
p84	① 의무발급사업자 : ~의 합계액이 8천만원 (2024.7.1.부터 시행) 이상인 개인사업자 (이하 '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')*는 ~ 개정 (종전 : 2022.7.1.부터는 2억원, 2023.7.1.부터는 1억원, 이하 같음) *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최초로 해당하는 경우부터 계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인 것으로 본다. 개정 (2023.7.1.부터 시행)	① 의무발급사업자 : ~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(그 이후 직전 연도의 사업장 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이 8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포함. 이하 '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'라 함)는 ~ 개정 (8천만원은 2024.7.1.부터 시행한다, 그 외의 개정사항은 종전의 1억원을 기준으로 2023.7.1.부터 시행함. 이하 같음)
	④ 의무발급시기 : 전자~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부터 전자~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 개정 (2023.7.1.부터 시행, ~)	④ 의무발급시기 : 전자~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이 시작하는 날부터 전자~의 다음 과세기간이 시작하는 날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. 개정 (1억원 기준으로 2023.7.1.부터 시행~)
	⑤ 통지의무 : 관할 ~ 발급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기 1개월 ~ 발급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기 1개월 ~	⑤ 통지의무 : 관할~ 발급해야 하는 날이 시작되기 1개월 ~ 발급해야 하는 날이 시작되기 1개월 ~

세법 노트북-법인세법 1쇄

페이지	수정전	수정후
p29	사례3 외국인~ 〈익금불산입〉 B법인 ~ (기타)	〈익금불산입〉 B법인 수입배당금 4,750,000 ^{*2)} (△유보)
p109	⑦ 국민연금사업, ~의료보험사업 등 개정	⑦ 국민연금사업, ~의료보험사업 등
p111	정리1 특수관계인 범위 그 친족	그 친족* * 친족의 범위(이하 같음) : 4촌 이내의 혈족, 3촌 이내의 인척, 배우자(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),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·직계비속, 본인이 「민법」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(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함) 개정 (종전 : 6촌 이내의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, 시행일 2023.3.1.)

세법 노트북-소득세법 1쇄

페이지	수정전	수정후
p31	② 공동소유주택 ~기준시가 9억원 초과	기준시가 12억원 초과
p44	한도액 ① 정치자금기부금, <u>고향사랑기부금</u> 및 특례기부금 : 100% 개정 (2023.3.1.부 터 시행)	① 정치자금기부금 및 특례기부금 : 100% *
	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 ③ <u>고향사랑기부금</u> : 이월공제 × 개정 ④ <u>우리사주조합기부금</u> : 이월공제 ×	③ <u>우리사주조합기부금</u> : 이월공제 ×
p48	기부금의 범위 ② <u>고향사랑</u> ~ ③ <u>특별재난지</u> ~ ④ <u>회비</u> ~ ⑤ <u>법령</u> ~	② <u>특별재난지</u> ~ ③ <u>회비</u> ~ ④ <u>법령</u> ~
	정치자금(개인) <u>고향사랑(개인)</u> 특례기부금	정치자금(개인) 특례기부금
	<u>우리사주 조합기부금</u> (기준소득금액-기부금- <u>고향사랑기 부금</u> -특례기부금)×30% 개정	(기준소득금액-이월결손금-정치자금기부금-특례기부금)×30%
	일반기부금 * 소득금액=기준소득금액- <u>고향사 랑기부금</u> -특례기부금~ 개정	* 소득금액=기준소득금액-이월결손금-정치자금기부금-특례기부금-우리사주조합기부금
p52	⑨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~ 공공기관 ~	⑨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 제2조 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 ~
p82	(바) <u>본인이</u> ~ <u>생모</u> ~	(바) <u>본인이</u> ~ <u>생모(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 는 사람으로 한정한다)</u> ~
133	⑤ 해지 전 6개월 ~공제가입자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상 ~	⑤ 해지 전 6개월 ~ 공제가입자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상 <u>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으로</u> ~
p141	<세부내용2> 대주주 판단 기준 주주 1인과 ~동일함 개정 (2023.3.1.부 터 시행)	주주 1인과 ~동일함 개정
	② <u>주권비상</u> ~ <u>합계</u> 개정 (2023.3.1.부 터 시행)	② <u>주권비상</u> ~ <u>합계</u> 개정
p181	주4) 전자계산서 의무발급~의 사업자 (최초로 요건을 충족한 이후~	주4) 전자계산서 의무발급~의 사업자(<u>그 이후</u> ~